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항만용역업	(주)가드코리아	한주영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6번길 33, 201호
항만용역업	(주)에스씨엘로지스	윤기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내로 28, 3층 309호(상내동, 강동빌딩)
항만용역업	(주)하나마린	이황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연암길 88, 1층
항만용역업	한국프로텍	서효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02번길 8, 1005호(좌동)
선박연료공급업	다보마린(주)	한동부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09(2층)
선박연료공급업	(주)골드오션	김현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7, 2층
선박연료공급업	(주)가람해운	김영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3-12, 602호(초량동, 동서빌딩)
선박수리업	시스텍(주)	강진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현대중공업 내 시스텍
선박수리업	(유)해동엔지니어링	곽영갑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79번길 33
선박수리업	한국프로텍	서효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02번길 8, 1005호(좌동)
선용품공급업	(유한)해동엔지니어링	곽영갑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79번길 33
선용품공급업	창녕축산	김진극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5
선용품공급업	대송컨테이너항업	최상식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716번길 1(황성동)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선용품공급업	마린토탈	김동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59
선용품공급업	(주)제이에스글로벌	김정근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34-1(약사동)
선용품공급업	퀵마린서비스	김희경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25번길 18, 103호(삼산동)
선용품공급업	(주)파트코	김화식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167, 2층(방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주)가드코리아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2026.6.1. 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에스씨엘로지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2026.6.1. 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하나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국프로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다보마린(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2026.6.1. 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주)골드오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주)가람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시스템크(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2026.6.1. 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유)해동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2026.6.1. 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한국프로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유한)해동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사업정지 6개월 (2026. 6. 1. ~ 2026. 11. 3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창녕축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대송컨테이너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마린토탈	사업수행실적 없음 (5차 위반)	사업정지 6개월 (2026. 6. 1. ~ 2026. 11. 3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 근거
선용품공급업	(주)제이에스글로벌	사업수행실적 없음 (5차 위반)	사업정지 6개월 (2026. 6. 1. ~ 2026. 11. 3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퀵마린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주)파트코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026. 6. 1. ~ 2026.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기타사항

-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다.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 이후 사업을 계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라.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 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052-228-56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